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유전열
전화 051-606-4164



부산본부세관
전화 051-620-6610

보도자료
2021. 3. 23.(화)

제목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범죄집단' 총책 등 6명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동원)는 '20. 7.경부터 '20. 9.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23억 원 상당의 담배 (약 76,000보루)를 밀수입한 사건을 수사하여,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임을 밝혀,
 - 총책, 운반책, 판매알선책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죄, 관세법위반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이들 조직이 담배 밀수 및 판매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 1,6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해, 밀수입 사범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유사한 밀수입 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 '범죄집단' 의율 시, ① 단순 밀수입 범행에 비해 가중처벌되며[범죄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관세법상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② 범죄집단에 단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 집단이 목적으로 한 범죄(본건의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로 처벌 가능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61세) 등 6명

※ [별첨]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참조

II

수사 경과

- '20. 9. 부산본부세관, 수사 착수
- '20. 9. ~ '21. 2. 조직원, 구매자 등 5명 구속 기소
- '21. 3. 22. 조직 총책 1명 구속 기소

III

밀수입 조직의 범행방법 및 범죄집단 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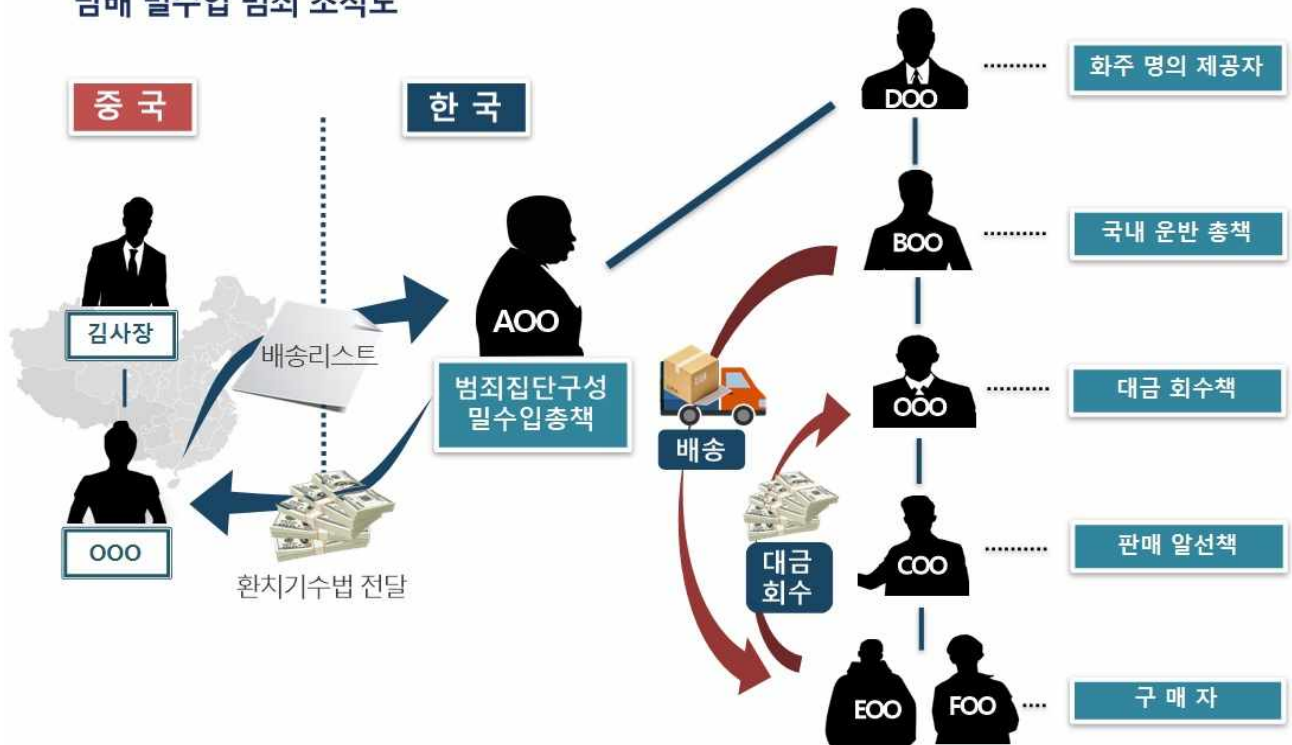
1 수사착수 배경

- 부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 물품과 서류 간의 확인·대조 등이 소홀한 보세창고를 통해 국내 통관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조직적인 밀수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본부세관은 밀수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구매자, 운반책 등을 검거하여 본건 수사에 착수함

2 범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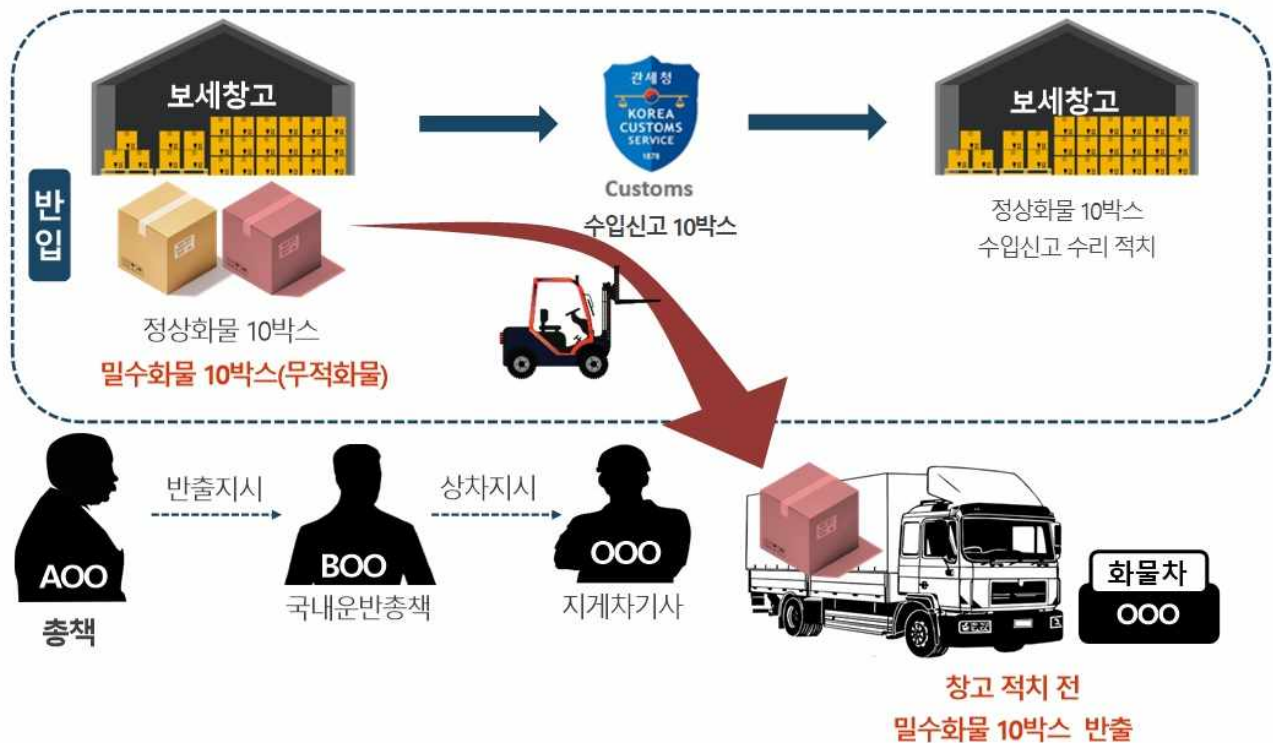
- (범죄집단 구성) 총책은 중국으로부터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기 위해 수입 업체의 명의를 제공해 줄 조직원, 보세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할 조직원, 밀수한 담배를 국내에서 운반할 조직원, 담배의 판매처를 알선할 조직원, 대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관리할 조직원 등을 섭외하여 '범죄집단'을 구성함

담배 밀수입 범죄 조직도



- (밀수·판매) 이들은 총책의 지시로 정상 화물과 함께 위조 담배 등을 선하증권 없이 무적화물로 국내로 들여온 다음, 화물이 보세창고에 적치되기 전 국내 운반 총책이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이를 반출하여 국내에서 판매함

담배 밀수입 방법



③ 범죄집단 의의

- 본건 담배밀수 조직은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총책을 정점으로 운반책, 판매 알선책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수익배분, 가입·탈퇴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 단순 밀수입의 공범을 넘어,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죄집단'으로 의의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① 수사 의의

- 그동안 다수의 공범들이 가담한 밀수입 범죄에 있어 단건 또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에 그침으로써 지속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고 범행 전모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바, 본건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밀수입 범죄에 대해 범죄집단으로 엄정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범죄집단' 의의 시, ① 단순 밀수입 범행에 비해 가중처벌되며[범죄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관세법상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② 범죄집단에 단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집단이 목적으로 한 범죄(본건의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로 처벌 가능

- 부산지검과 부산본부세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수담배의 구매자로부터 밀수조직의 총책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 일체 검거 및 압수수색함으로써 범죄집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입 범행의 실체를 규명함
- 본건 밀수조직이 담배 밀수 및 판매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 2억 1,600만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밀수입 범죄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② 향후 계획

- 향후 본건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유사 밀수입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의하여 엄단함으로써 국내 통관질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별첨]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신분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1	A○○ (61세)	담배 밀수입 조직 총책	'20. 7. ~ '20. 9. 범죄집단을 구성하여 중국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21. 3. 22. 구속 기소
2	B○○ (59세)	담배 밀수입 조직 국내 운반 총책	'20. 7. ~ '20. 9.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 [관세법위반, 범죄단체활동]	'20. 12. 18. 구속 기소
3	C○○ (51세)	담배 밀수입 조직 판매 알선책	'20. 7. ~ '20. 9.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 [관세법위반, 범죄단체활동]	'20. 11. 24. 구속 기소
4	D○○ (39세)	담배 밀수입 조직 명의 제공자	'20. 7. ~ '20. 9.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 [관세법위반, 범죄단체활동]	'21. 2. 24. 구속 기소
5	E○○ (60세)	담배 밀수입 구매자	'20. 9. 중국으로부터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하는 범행을 방조하고 밀수품 취득 등 [관세법위반(밀수입방조) 등]	'20. 12. 3. 구속 기소
6	F○○ (76세)	담배 밀수입 구매자	'20. 9. 중국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하는 범행을 방조하고 밀수품 취득 등 [관세법위반(밀수입방조) 등]	'20. 9. 28. 구속 기소